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833

발의연월일: 2025. 3. 12.

발 의 자:김재원·김준형・박정현

신장식 · 강경숙 · 김선민

정혜경 • 이해민 • 임오경

박은정 · 서왕진 · 황운하

김준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봉사란 국내·외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봉사는 의료기관으로의 접근성이 제약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

이러한 의료봉사에 의료인 또는 의료인 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의료봉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의료봉사를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의료봉사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료봉사를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겸직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료봉사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의료봉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3절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7조의2(의료봉사) ① 의료인 또는 의료인 단체는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봉사를 할 수 있다.
 - ② 의료인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료봉사를 하여야 하며, 의료봉사를 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1항, 「지방공무원법」 제56조제1항에 도 불구하고 의료봉사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겸 직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회에 의료봉사를 제공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봉사에 필요한 실비를 지 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27조의2(의료봉사) ① 의료인
	또는 의료인 단체는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의료서
	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봉사를
	<u>할 수 있다.</u>
	② 의료인은 업무에 지장을 주
	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료봉
	사를 하여야 하며, 의료봉사를
	하려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③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
	1항, 「지방공무원법」 제5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봉사
	는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겸직으로 보지 아
	<u>니한다.</u>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사회에 의료봉사를 제공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인 단체에 예
	산의 범위에서 의료봉사에 필
	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